

청주지방법원 2023. 6. 9 선고 2022가단669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3. 5. 12.

판 결 선 고 2023. 6. 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해,
가. 망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8. 10. 1.자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들은 망 E에게 청주지방법원 2018. 10. 12. 접수 제100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청구에 의해 2016. 3. 9. “F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”는 지급명령(이 법원 2016차651)이 내려졌고,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E은 2018. 10. 12.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의 각 1/2지분에 관해 2018. 10. 1.자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00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등기’라 한다)를 각 마쳐주었다.

다. E은 피고들의 부친이며, 2021년경 사망하였다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. 피고들은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22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2. 4. 26.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이 사건 계약 이전에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, 이후 망인을 상대로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,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

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‘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’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,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.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망인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자기 소유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(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이 ‘증여’가 아니라 ‘매매’라 하더라도 달리 볼 바는 아니다), 망인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들은 “망인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G의 가압류 채무금 2,2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,500만 원을 승계하는 등 시세(5,500만원 내지 6천만 원)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다”고 하여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

살피건대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(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),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라. 소결론

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망인이 사망하였고,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,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피고들의 상속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룡

